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유형3)지침서

● 문서번호 : DTNC-CQI-01-02

● 제정일자 : 2024년 03월 20일

● 개정일자 : 2026년 02월 27일

● 개정번호 : 3

● 배 포 처 :

관리본 (관리번호 :) 비관리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차경수	이상욱	남기혁
서 명			
서명일자	2026-02-27	2026-02-27	2026-02-27

【주】 비관리본은 참조용으로 업무에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본 지침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경영책임자의 승인 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2/21

개정번호	개정일	개정내용
0	2024.03.20	KS Q ISO/IEC 17065 최초 제정
1	2024.09.05	-지침서 제목 변경(DTNC-CERT/3 명칭 추가) -2항 추가, 3.2항 유형 1a 내용 삭제 및 유형 명칭 추가 -4.4.2항, 6.2항, 11.1항, 11.2항 추가, 7항 용어 변경
2	2025.07.15	1.지침서 문서명 변경: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DTNC-CERT/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유형3) 2.3.1항 1)정보통신기기 구분 및 2), 3), 4) 추가 3.3.2항, 3.3항 명칭과 유형 정의 문구 수정 4. 4.3.1항 <별표2>, <별표3>, <별표4> 추가 5.4.4.2항의 J) 내용 수정(DTNC인증) 6.첨부: <별표1> 제품명/제품의 범주 중에 일부 삭제: 가전제품/전기네트워크기반기기 /전기통신단자기기 삭제 7.첨부: <별표2>, <별표3>, <별표4> 추가
3	2026.02.27	3.2항 및 9항 사후관리 주기 1년->2년 / 4.4.2항 K추가 / 5.1항 공개항목 보완 / 별표3 수지형(휴대용) 정원 진공기 삭제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3/21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4/21

1 목적

(주)디티앤씨 제품인증기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전기제품의 적합성평가 및 인증에 적용하며,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한 제품에 대해 제품인증서 발급과 인증마크 사용 허가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2 제품인증스킴의 관리

2.1 제품인증기관은 인정기구로부터 KS Q ISO/IEC 17065의 인정을 받고, 지속 유지해야 한다.

2.2 제품인증스킴의 관리

2.2.1 본 인증스킴은 매년 점검하여 최신화를 유지하고, 제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증스킴기준의 변경 시에는 관련 의뢰자 및 유관기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 1)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사항과 피드백을 고려하여 인증스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2) 대상:인증시스템, 제품평가(시험) 표준, 공장심사의 절차 및 기준 변경 등

2.2.2 인증스킴의 변경시에는 다음의 타당성을 CAS유효성확인결과보고서(DTNC-CAS-02-01)를 통하여 평가하여 적합성평가스킴에 적절함을 입증하고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 1) CAS의 목적에 대한 설명
- 2) CAS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 3) CAS의 목적을 충족하도록 수립한 요구사항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 4) 요구사항의 충족을 결정하기 위해 활용할 방법에 대한 설명
- 5) 요구사항의 충족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기술된 방법이 적절함의 분석
- 6) 사용할 적합성평가활동에 대한 결정(적합성평가표준의 식별 포함)
- 7) 선택한 적합성평가활동이 적절함을 보여주는 분석

<비고> 타당성평가는 시범심사(pilot audit)의 형태로 또는 스킴이 가용한 국제 표준이나 국가표준에 기반함을 입증하는 형태로 할 수 있음

3 적용 범위

3.1 제품 및 안전 요구사항

제품은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중분류(KOLAS-R-002)에 따라 인정된 분류 및 제품으로 한정하고, 각 제품의 안전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5/21

제품		안전 요구사항
1)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03.041)	정보통신 사무기기	*KC 62368-1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 기술기기 제1부: 안전요구 사항 [정보통신 사무기기,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600 V 이하), 정보통신기술 업무 및 사무기기 내의 전기 및 전자기기]
2)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 제어장치 제조업 (03.047)	절연변압기	*KC 61558-1 :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1부: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C 61558-2-6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2-6부: 범용 절연 변압기의 개별 요구 사항 *KC 61558-2-13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2-13부: 범용 단권 변압기의 개별 요구 사항
3)가정용 기기 제조업(03.051)	전기기기	*KC 60335-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정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KC60335-2-8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정성 제2-80부: 전기 팬(fan)의 개별요구사항
4)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03.048)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K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3.2 제품인증스킴의 명칭과 유형

제품인증스킴의 인증스킴 명칭은 DTNC인증이고, 인증스킴 유형3으로 한정한다.

항목	인증스킴 유형3
인증스킴 명칭	DTNC인증
인증 유효기간	3년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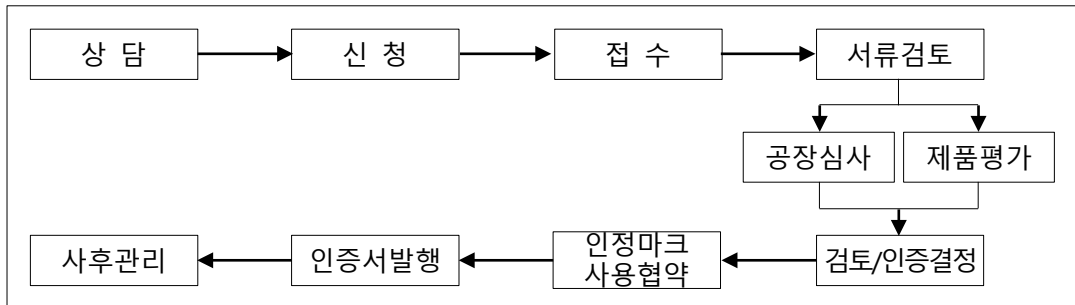
연장	가능
확대	가능
갱신	가능
변경	가능
수정	가능
사후관리	2년 1회
파생모델	가능
인증마크 표시	가능

3.3 인증스킴 유형3

인증스킴 유형3의 인증절차는 아래의 업무 흐름도 같다.

의뢰된 제품이 아래 “4항 인증절차”의 요구 사항이 모두 적합하면 본 제품인증스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표 1 > 업무흐름도



4 인증절차

인증절차는 (주)디티앤씨 제품인증기관의 내부 절차(제품인증업무관리절차서 DTNC-CQP-05)에 따라 수행한다.

4.1 인증신청

의뢰자는 제품인증기관의 제품인증신청서(DTNC-CQP-05-01)에 따라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정보를 작성 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정보가 함께 제출 되어야 한다.

- 1) 제품인증신청서(DTNC-CQP-05-01)의 세부정보 (제품정보, 파생모델, 생산지 등)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7/21

- 2) 제품인증 협약서(DTNC-CQP-05-02)
- 3) 제조 및 검사 설비 현황(필요 시)
- 4) 제품설명자료(사진포함)
- 5)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되는경우)
- 7)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서)
- 8) 기타 인증기관의 요청 사항 등

4.2 신청의 검토(문서/제품/인증계획)

제품인증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인증을 수행한다.

- 1) 신청자 및 제품에 관한 정보가 인증절차 수행에 충분한지 여부
- 2) 인증 범위
- 3) 모든 평가 활동의 수행방법의 유효성.
- 4) 인증활동의 시험 역량과 능력.
- 5) 인증의 신규, 확대, 연장 또는 변경(수정, 갱신)
- 6) 생략 가능한 사항(제품전체 평가, 일부 시험 항목, 공장심사 등)
- 7) 제3자 시험성적서(CB 등) 적절성
- 8) 공장심사 허용 및 일정
- 9) 시험 시료의 적절성(최초신청 또는 공장검사 Sampling 시료)
- 10) 인증 일정(상호 협의)
- 11) 인증수수료 협의 및 납입 방법 등

4.3 평가

제품인증기관의 내부 절차(제품인증업무관리절차서 DTNC-CQP-05)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제품평가(시험)와 공장심사로 이루어 지며, 기본적으로 내부자원으로 평가를 수행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외부자원을 통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4.3.1 제품평가(시험)

- 1) 제품평가(시험)기준 및 시험 항목: 시험시료는 <별표1>,<별표2>,<별표3>,<별표4>의 제품평가(시험) 기준 및 시험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시험시료의 선정
 - ① 최초 신청 시: 의뢰자가 제출하거나 인증심사원이 생산공장에서 직접 Sampling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8/21

② 사후관리(정기검사) 시: 인증심사원이 생산공장에서 직접 Sampling을 통하여 선정하다.

3) 시험기관의 선정은 제품인증기관에서 KS Q ISO/IEC 17025의 절차에 인정된 시험기관을 선정한다.

4.3.2 공장심사

해당 제품의 제조공장은 제조설비, 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이 적합하여야 한다. 공장심사는 제품인증기관의 내부 절차(제품인증 공장심사 지침서 DTNC-CQI-05-01)에 따라 수행한다.

1) 심사 수행

- ① 공장심사는 제품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수행한다.
- ② 공장심사 세부 내용은 제품인증협약서 서명 후 별도 안내한다.
- ③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장 방문 심사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문서심사, 온라인 비대면 공장심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다.

2) 시료채취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동안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시료채취를 제품인증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해당 제조사는 협조해야 한다.

3) 제조자 준수 사항

- ① 해당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확보해야 한다.
- ② 해당제품의 제조설비는 생산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야 한다.
- ③ 해당제품 검사에 필요한 자체검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단,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용역검사 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각 검사설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 3 조제 16 호에 따른 공인교정 기관을 통하여 교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단, 외부교정이 불가능한 설비는 자체 관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된다.

4) 제조자 자체 검사기준 및 항목

해당업체는 다음의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및 제품검사 등에 대한 자체 검사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자체검사 규정은 본 절차서의 제품평가(시험) 기준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① 자재(인수)검사: 해당제품의 주요부품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자 자체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자 자체규정에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9/21

적합한 공급자의 시험 또는 검사성적서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공정검사: 제조자 자체규정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품검사: 검사주기 별로 제조자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A. 대상제품의 주요재질 또는 부품, 설계, 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해당 제품의 모델 에 대하여 전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재검사 또는 공정 검사항목과 중복 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B. 제품인증기관의 사후관리(정기심사) 시에 시료채취를 통하여 제품 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자체검사에 해당된다.
 - C. 제품검사를 공인시험기관을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체검사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제조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의 기록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6) 제조자는 공장심사 시에 발생한 부적합 사항을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4 평가의 검토 및 인증결정

4.4.1 평가의 검토 및 인정 결정은 제품인증기관의 내부 절차(제품인증업무관리절차서 DTNC-CQP-05)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제품인증기관은 검토 결과가 적합하면 다음을 수행한다.

- 1) (주)디티앤씨 “제품인증서”를 발행하여 의뢰자에게 전달한다.
- 2) (주)디티앤씨는 의뢰자와 인증마크 사용 협약 후에 마크 사용을 허락한다.
- 3) 의뢰자는 전달받은 제품인증서와 허락된 마크를 약정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인증마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크 사용에 대하여 제품인증기관은 상세히 안내한다.

4.4.2 제품인증서의 정보는 명확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공식 문서로 구성한다.

- A. 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소
- B. 인증일자
- C. 신청자(의뢰자)명 및 주소
- D. 인증범위(시험기준)
- E. 인증기간 또는 유효기간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0/21

- F. 기본 및 파생모델, 다수공장명, 안전관리부품(DTNC-CQP-05-22) 및 재질 목록
- G. 인증의 변경 사항
- H. 접수번호 등 기타 필요한 정보
- I. 인증기관책임자 서명 또는 규정된 승인 표시
- J. DTNC 인증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선언
- K. 진위확인 안내문 및 연락처

5 인증제품 목록 관리

5.1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서를 의뢰자에게 전달 후, 아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1) 등록일, 인증번호, 스킴유형, 유효기간, 변경 내용(축소/정지/취소)
- 2) 제품명, 모델명
- 3) 인증기준
- 4) 의뢰자 정보

5.2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품인증서 발행일부터 **3년**동안 유효하다. 파생 모델의 인증유효기간은 기본모델과 동일하다.

6 인증의 유지

의뢰자는 인증의 유지를 위하여 제품인증협약서(DTNC-CQP-05-02) 및 제품인증마크사용협약서(DTNC-CQP-08-02)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1 지속적인 생산관리

- 1) 지속적인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생산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2) 매 **2년** 내에 **1회** 제품인증기관의 공장심사 및 제품평가(시험)를 받아야 한다.

6.2 제품인증서의 유효기간 변경 또는 갱신 시에는 제품인증기관의 해당 절차를 따른다.

- 1)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연장된 인증서 유효기간은 연장 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
- 2) 다음의 인증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증서 변경 시에는 변경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제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 변경의 인증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하며, 변경된 인증서는 인증 일부터 **3년**이다.
 - ① 인증기준 및 인증스킴 변경
 - ② 설계 변경, 부품 교체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1/21

③ 생산지 변경

6.3 인증마크의 오 사용 방지 사항

- 1) 인증을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의 오해의 소지 방지
- 2)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의 오용 방지
- 3) 광고, 표시는 인정범위에서만 표현

6.4 인증에 영향을 주는 다음 변경 사항은 제품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 1) 인증기준의 변경
- 2)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이나 부품교체
- 3) 제품의 상표 변경
- 4) 법적, 상업적, 조직의 지위 또는 소유권 변경
- 5) 생산공정 또는 장소의 변경
- 6) 기타 인증 제품과 관련된 사항 변경

7 인증의 확대, 축소, 수정, 변경, 갱신

의뢰자는 제품인증서의 변경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신청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품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변경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한다.

- 1) 이미 인증된 기본모델에 파생모델을 추가할 경우
- 2)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자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 3) 인증서에 첨부된 관리부품의 복수등재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
- 4) 주소, 상호의 변경
- 5) 인증서의 오류

8 인증의 개선명령, 정지 또는 취소

8.1 개선명령

제품인증서 소유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서 소유자에게 3개월 이내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과장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심사에 따른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3) 소비자의 정당한 보상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2/21

- 4) 사후관리결과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5) 인증마크 수수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6) 인증제품에 대한 설계, 원재료, 공정 등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인증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8.2 표시 정지

제품인증서 소유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제품인증기관은 제품인증서 소유자에게 일부 또는 전체 인증 제품에 대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제품인증서 원본 반납, 인증 마크 사용을 중지, 시장에 출하금지 및 필요 시 제품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제품인증서 소유자가 이의 제기한 경우 제품인증기관은 재심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지처분에 대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제품인증기관은 효력정지 처분을 해제한다.

- 1) 개선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2) 인증제품 생산중단 보고를 위반한 경우
- 3) 사후관리 결과 기술인력, 설비,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 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3 인증 취소

제품인증서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제품인증기관은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인증 취소 시에는 제품인증서 소유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8.3.1 정지명령을 받고도 인증 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여된 기간 중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8.3.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되는 경우

8.3.3 제품인증마크 표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1) 인증 받은 자가 다른 회사제품을 자체 제조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할 때 등
-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표준표시를 할 때 등

8.3.4 인증 받은 자의 제조공장이 부도,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증표시 제품의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8.3.5 사후관리 및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8.3.6 허위광고 및 인증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인증 받은 자가 홍보 및 광고를 하여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3/21

인증기관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8.3.7 제품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8.3.8 휴지기간 만료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8.3.9 사후관리 결과 치명결함이 발견된 경우
- 8.3.10 기타 제품인증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8.4 제품인증서 소유자는 인증 취소 통보를 받으면 인증서 원본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 후에는 인증마크 및 제품인증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9 사후관리(정기심사)

제품인증서 소유자는 매 2년 내에 1회 사후관리(정기심사)를 제품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정기심사)는 제품인증기관의 절차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평가(시험)로 수행한다.

- 9.1 공장심사: 상기 4.3.2와 같이 수행한다
- 9.2 제품평가: 상기 4.3.1과 같이 수행한다
- 9.3 수수료: 별도 안내된 수수료표 참조한다
- 9.4 사후관리 내용 및 주기

항 목	심사주기
1)공장샘플의 시험	<u>1회/2년</u>
2)공장심사	<u>1회/2년</u>
3)제재조치 준수 여부 : *개선명령 / 마크표시정지 / 인증취소	수시
4)제품인증서/인증마크 오용 여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홍보물 및 팜플렛 등	수시

10 재평가 및 부적합관리

제품인증기관은 인증의 활동 및 유효기간 중에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대응을 요청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0.1 제품의 설계 또는 사양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는 경우
- 10.2 제품인증의 인증기준이 변경된 경우
- 10.3 제품인증서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10.4 관련제품이 인증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정보 확인 경우 등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4/21

11 불만 및 이의제기

의뢰자는 인증에 대한 불만 및 이의 제기는 우편, 전화, 메일 등으로 할 수 있다
불만 및 이의 처리는 제품인증기관의 내부 절차(불만 및 이의처리 절차서, DTNC-CQP-09)에 따라 처리 한다.

11.1 불만사항의 종류

- 본 제품인증스킴에 대한 불만 사항
- 제품인증 업무, 제품평가 및 공장심사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
- 제품인증 처리기한의 경과, 직원의 대응, 불공평 등 서비스 불만
- 제품인증 업무 관련 기밀유지, 법적 소송 등 관련 사항 등

11.2 불만처리 절차

절차	세부 내용
1.불만 및 이의 신청	객관적,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의뢰자 제공사항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인증제품의 업체명 •이의, 불만 및 논쟁 사유 •기타
2.접수	신청접수 및 의뢰자에 통보(품질책임자)
3.조사	불만 및 이의 사항 조사(품질책임자)
4.분석 및 조치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 발행(인증부서)
5.조치결과 통보	1개월 이내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품질책임자)
6.공평성위원회	재차 불만 제기 시 위원회 상정하여 검토

12 기록 및 보존

본 지침서는 제품인증기관의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DTNC-CQP-11), 기록관리 절차서(DTNC-CQP-12)를 따른다.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5/21

< 별표1 >

1.정보통신사무기기 제품의 평가(시험) 기준

제품평가(시험) 기준	제품 명	제품의 범주
KC 62368-1: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 기술기기 제1부 : 안전 요구 사항	은행용 기기	현금 자동 거래(현금지급)기기 등
	데이터 및 문자 처리 기기 및 관련 장치	데이터 준비 장치 / 데이터 처리 장치 / 데이터 저장 장비 / 개인용 컴퓨터 / 플로터 / 프린터 / 스캐너 / 문자 처리 장치 / 시각 표시 장치 등
	데이터 네트워크 장치	부리지 /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 데이터 단말 장치 / 라우터 등
	전기 및 전자 소매 기기	금전 등록기 / 전자저울을 포함한 POS 단말기 등
	전기 전자 사무 기기	계산기 / 복사기 / 문서세단기 / 지우개 / 마이 크로 그래픽 사무기기 / 전동 동작 파일 / 종이 트리머(편치, 절단기, 분리기) 종이 조깅 기기 / 연필 깎기 / 스테이플러 / 타자기 등
	다른 정보기술기기	사진 프린팅 기기, 공공 정보 단말기, 멀티미디어 기기, 직류전원장치 등
	우편 기기	메일 처리 기기, 우표 기기 등
	*상기 리스트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 리스트에 나열되지 않은 기기는 반드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KC 62368-1 시험 항목

아래의 시험항목 중에 제품 별 적용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한다.

No.	시험 항목
1	일반 요구 사항 : 에너지원 분류 / 에너지원에 대한 보호 / 보호수단 / 폭발 / 도선의 고정 / 전원콘센트에 직접 삽입용 기기 / 코인 및 버튼 단전지를 포함하는 기기 / 도전성 물체(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의 가능성 / 부품 요구 사항
2	전기적 상해
3	전기적 화재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6/21

4	유해물질에 의한 상해
5	기계에 의한 상해
6	열화상 상해
7	방사(선) 일반
8	이 문서의 범위 내 기기의 예(부속서 A)
9	정상동작, 이상동작, 및 단일고장 상태 시험 (부속서 B)
10	자외선(UV radiation) (부속서 C)
11	시험 발생기(부속서 D)
12	오디오 증폭기를 포함한 기기에 대한 시험조건(부속서 E)
13	기기 표시, 사용 설명서 및 지침 보호수단(부속서 F)
14	부품(부속서 G)
15	전화 벨(링) 신호에 대한 기준(부속서 H)
16	과전압 범주 (KS C IEC 60364-4-44 참조) (부속서 I)
17	중간절연 없이 사용을 위한 절연권선 전선(부속서 J)
18	안전 인터락(부속서 K)
19	차단장치(부속서 L)
20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는 기기와 보호회로(부속서 M)
21	전기화학적 전위(V) (부속서 N)
22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의 측정
23	도전성 물질(물체)에 대한 보호수단(부속서 P)
24	건물 배선과 상호 연결을 위한 회로(부속서 Q)
25	제한 단락 회로 시험(부속서 R)
26	내열 및 내화성 시험(부속서 S)
27	기계적 강도 시험(부속서 T)
28	CRTs의 기계적 강도 및 내파 영향에 대한 보호(부속서 U)
29	접근 가능한 부위의 결정(부속서 V)
30	이 문서에 도입된 용어의 비교(부속서 W)
31	AC 주전원에 연결된 회로에서 절연의 공간거리 측정(부속서 X)
32	옥외용 엔클로저 구성 요구 사항 (부속서 Y)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7/21

<별표2>

1. 절연변압기 제품의 평가(시험) 기준

제품평가(시험)기준	제품명	제품의 범주
1) KC 61558-1: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1부: 일반요구사항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압조정기 / 가정용소형변압기/교류어댑터
2) KC 61558-2-6: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2-6부: 범용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3) KC 61558-2-13: 전력용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제2-13부: 범용단권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비고: 정격출력 5 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2. KC 61558-1, KC 61558-2-6, KC 61558-2-13의 시험 항목

아래의 시험항목 중에 제품 별 적용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한다.

No.	시험 항목
1	일반 요구 사항
2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3	입력 전압 조정의 변동
4	부하시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
5	무부하 출력전압
6	단락회로 전압
7	온도 상승
8	단락 회로 및 과부하 보호
9	기계적 강도
10	유해한 먼지, 고체 물질 및 습기의 침투에 대한 보호
11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12	구조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8/21

13	부품
14	내부배선
15	전원접속 및 외부 유연성 케이블 또는 코드
16	외부 전선 접속용 단자
17	접지 접속
18	나사 및 접속
19	연면 거리, 공간 거리 및 절연물을 통한 절연 거리
20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21	내부식성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19/21

<별표3>

1. 전기기기 제품의 평가(시험) 기준

제품평가(시험)기준	제품명	제품의 범주
1)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정성 제1부: 일반요구 사항 2) KC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정성 제2-80부: 전기 팬(fan)의 개별요구사항	팬 종류의 전기기기	선풍기 / 송풍기 / 환풍기 / 전기냉풍기 등 비고: 정격입력이 1 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KC 60335-1, KC 60335-2-80의 시험항목

아래의 시험항목 중에 제품 별 적용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한다.

No.	시험 항목
1	표시 및 사용설명서
2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3	전동기 구동 기기의 기동
4	정격 입력 및 전류
5	온도 상승
6	운전시의 누설 전류 및 절연 내력
7	과도 과전압
8	내습성
9	누설 전류 및 절연내력
10	변압기 및 관련 회로의 과부하 보호
11	내구성
12	이상 운전
13	안전성 및 기계적 위험
14	기계적 강도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20/21

15	구조
16	내부 배선
17	부품
18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19	외부 전선용 단자
20	접지 접속
21	나사 및 접속
22	연면 거리, 공간 거리 및 고체 절연
23	내열성 및 내화성
24	내부식성
25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성

(주)디티앤씨 (DTNC-CQI-01-02)	제품인증지침서	제정일자	2024년03월20일
		개정번호	3
	전기제품안전인증기준 (유형3)	개정일자	2026년 02월 27일
		페이지	21/21

<별표4>

1. 전기저장장치구성품 제품의 평가(시험) 기준

제품평가(시험)기준	제품명	제품의 범주
1) K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

2. KC 62619의 시험항목

아래의 시험항목 중에 제품 별 적용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한다.

No.	시험 항목
1	외부단락 시험
2	충돌 시험
3	낙하 시험
4	고온 시험
5	과충전 시험
6	강제 방전 시험
7	내부단락검토 (내부단락 시험)